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643 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칙」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8월 28일

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

서울특별시 중구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칙 폐지규칙안

1. 폐지사유

「서울특별시 중구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규칙」의 상위 근거 법령인 「조세범처벌법」 제16조 및 舊 「지방세법」 제67조의 조문삭제로 규칙의 존치 근거가 상실되었고,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은 「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」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중구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칙」 폐지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.9.17(화)까지

이 문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승인없이 수정 할 수 없습니다.
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〔참조:세무1과장,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, 중구청(예관동) 전화 : 02-3396-5105, FAX : 02-3396-8695, E-mail : kiti720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나. 성 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(☎3396-5105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서울특별시 중구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칙 폐지규칙안 1부. 끝.

이 문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승인없이 수정 할 수 없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칙 폐지규칙안

서울특별시 중구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 문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승인없이 수정 할 수 없습니다.